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-22호

「강릉시 장애인·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7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장애인·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장애인·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·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수리비용 등의 지원, 지원기준 및 대상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보장구 수리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수리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3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장애인·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강릉시 장애인·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·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·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“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노인 등”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
3. “지원대상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4. “보장구”란 법 제65조에 따라 고시한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·노인 등(이하 “장애인 등”이라 한다)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

제3조(수리지원센터 운영 등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(이하 “수리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장애인단체,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
1.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
2.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 방문 수리. 이 경우 출동지역은 강릉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.

제4조(수리비용 등의 지원)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할 경우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기준 및 대상)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 보장구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·위탁한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,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.

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,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·장비·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③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서 지원대상자 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

제6조(신청·지원절차) ① 보장구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: 해당 증명서류

2.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등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신분 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

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위탁·지정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
1.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

2.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

제8조(보장구의 안전조치)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의 제한 등)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지원받은 경우,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, 그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장애인·노인 등 보장구 수리 신청서					
1. 인적사항(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				
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·여
주소	(전화번호:)				
장애명			장애정도		
수급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				
2. 수리 신청내용(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수동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스쿠터				
수리가 필요한 품목(부품)			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		
「강릉시 장애인·노인 등 보장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			(서명 또는 인)		
강릉시장 귀하					
※ 구비서류 : 1.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(해당자에 한함) 2.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					수수료
					없음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